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4. 6

발 의 자 : 구본춘의원의외5인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법률 제4464호 91. 12. 31)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주요골자

상임위원회를 둠에 따라

-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협의해야 함을 삽입.
- 청원서 회부와 심사가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함을 삽입.
- 소개위원의 취지설명시 본회의의 요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 취지를 설명함.
- 청원인등의 진술요구시 본회의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요구로 개정함.
-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.
-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음.
- 의회에 예산 및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.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 (이의신청) 제2항중 “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“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 6 조 (청원서 회부와 심사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.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한다.

제 7 조 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중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며,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에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 8 조 (청원인등 진술) 제1항중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는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 ②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. ②③④ (생략) 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.....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의</u> <u>본회의</u> <u>의 또는 위원회에</u> 제8조(청원인등 진술)①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는</u> ②(생략)	제5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이 경우 의장은 그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제6조(청원서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때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회부한다. ②③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..... <u>위원회의</u> <u>위원회에</u> 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 <u>위원회는</u> ②(현행과 같음)